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130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: 2022년 3월 28일

제안자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유예기간을 명시하고, 조례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축조 또는 축조 중인 영구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경과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 골자

- 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유예기간 설정
(안 부칙 제2조)
- 기축조 또는 축조 중 영구시설물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규정
(안 부칙 제3조)

3. 참고사항: 생략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유예기간) 영
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(해당 시설에
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)는 영 시행일부터 다음
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
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전설비(受電設備)의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
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.

1.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

가. 공공기축시설: 1년

나.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, 기숙사: 3년

다. 가, 나목 외의 시설: 2년

2.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: 1년

제3조(영구시설물 축조 사전승인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축조하였거나 축조 중인 영구시설물은 이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부칙 1. (생략) 2.	부칙 3. 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</u>	부칙 4. <u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 <u>제2조(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유예기간) 영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(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 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)는 영 시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 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전설비(受電設備)의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.</u> <u>1.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</u> <u>가. 공공기축시설: 1년</u> <u>나.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, 기숙사: 3년</u> <u>다. 가, 나목 외의 시설: 2년</u> <u>2.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: 1년</u> <u>제3조(영구시설물 축조 사전승인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축조하였거나 축조 중인 영구시설물은 이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.</u>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본문 중 “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”를 “서울특별시의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주차단위구획을”을 “구획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0호 중 “충전시설”을 “충전시설(이하 “충전시설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를 제3조의2(중전의 제3조)로 하고, 제목 “(책무)”를 “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시책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장”으로, “보급 촉진에 관한”을 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”을 “충전시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때, 시민들”을 “때에는 시민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.

-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과 그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에 힘써야 한다.

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이의 충전시설 관련 통계 등의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③ 시민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,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”를 “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법 제10조의 규정”을 “법 제10조”로 한다.

제6조제5항제1호 중 “운영하는”을 “설치·운영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혼잡통행료

제7조의 제목 “(충전시설 설치 등)”을 “(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자동차의 충전시설”을 “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(이하 “전용주차구역”이라 한다) 및 충전시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”를 “공동주택 등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”으로, “금융”을 “자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연간”을 “연간 사용료 및”으로, “한다.”를 “하고, 사용료 및 대부료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”로 하며, 같은

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7조제6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”을 “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”로 한다.

제7조의2의 제목 “(충전시설 설치대상)”을 “(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”를 “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주차단위구획 총 수(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, 이하 “총주차대수”라 한다)가 50개”로, “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(이하 “충전시설”이라 한다)”을 “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영 제18조의4 제1호”를 “영 제18조의5제1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시장”을 “「주차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”으로, “설치한 「주차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”을 “설치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충전시설”을 “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필요한 충전시설”을 “충전시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.

2. 전용주차구역의 수

제7조의3의 제목 “(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)”를 “(전용주차구역 설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용주차구역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(이하 “건축시설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국가, 자치구, 공공기관, 서울시 산하 공기업 및 영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 : 대상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
2. 제1호 이외의 시설 : 대상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있는 경우
2. 그 밖에 관할 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.

제7조의4의 제목 “(충전시설 설치비율)”을 “(충전시설 설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에

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하되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5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았거나 신고를 완료한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(기축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2) 이상으로 하되, 이 비율에 따른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.

④ 제7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

⑤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영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안내하는 표지 등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5(충전시설의 개방) 시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가 구축·운영·지원하는 충전시설을 개방하고, 개방하는 충전시설의 위치,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제9조제2항제2호 중 “충전 시설”을 “충전시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,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업무의 위탁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를 서울에너지공사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제5조, 제6조, 제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 업무
2. 제8조에 따른 충전료 징수 업무
3. 그 밖에 시장이 충전시설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유예기간) 영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(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)는 영 시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전설비(受電設備)의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.

1.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
가. 공공기축시설: 1년
나.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, 기숙사: 3년
다. 가, 나목 외의 시설: 2년
2.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: 1년

제3조(영구시설물 축조 사전승인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

례에 따라 축조하였거나 축조 중인 영구시설물은 이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“서울특별시 공용차량”이란 서울특별시의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, <u>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</u>에서 관리 운영하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(임차차량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 다만,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.</p> <p>5. “주차단위구획”이란 「주차장법」 제2조 제7호에 따른 <u>주차단위구획</u>을 말한다.</p> <p>6. 삭제</p> <p>7. ~ 9. (생략)</p> <p>10. “충전료”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는 요금을 말한다.</p> <p><u>〈신설〉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의회</u> ----- -----.</p> <p>5. ----- ----- <u>구획</u> -----.</p> <p>7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----- <u>충전시설</u> (이하 “충전시설”이라 한다) -----.</p> <p>제3조(책무) ① <u>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</u>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에 힘써야 한다.</p> <p>② <u>시장은 서울특별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이의 충전시설 관련 통계 등의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시민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,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</u></p>

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·2. (생략)

3.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기반 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

4.·5. (생략)

③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에 힘써야 한다.

④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,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이의 충전인프라 관련 통계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〈신설〉

⑥ 시민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,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4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) ① 시장과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

성화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3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정책)

① 시장-----
-----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-----
-----.

② -----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충전시설 -----

4.·5. (현행과 같음)

〈삭제〉

③ -----
----- 때에는 시민-----
-----.

〈삭제〉

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과 그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〈삭제〉

제4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) ①

가 설치한 공기업의 장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(이하 이 조에서 “구매”라 한다)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5조(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6조(운행에 대한 지원) ① ~ ④ (생략)

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
2. 혼잡통행료(전자태그 부착 자동차에 한함)
3. (생략)

⑥ (생략)

제7조(충전시설 설치 등)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_____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_____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5조(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) ① _____ 법 제10조 _____

_____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운행에 대한 지원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_____

_____.

1. _____ 설치·운영하는 _____
2. 혼잡통행료
3. (현행과 같음)

⑥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) ① _____
—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(이하 “전용주차구역”이라 한다) 및 충전시설 _____.

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, 공유재산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공유재산 제공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

〈신 설〉

④ (생략)

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의2(충전시설 설치대상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(이하 “충전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야 한

② — 공동주택 등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—

———— 자금 —————

③ ————— 연간 사용료 및

———— 하고, 사용료 및 대부료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
⑥ —————

———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—————

제7조의2(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

대상) ① —————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주차단위구획 총 수(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, 이하 “총주차대수”라 한다)

다. 다만,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.

1. 영 제18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
2.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「주차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

② 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, 관리자,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 건축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필요한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
2. 「주차장법」 제6조 또는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여부
3.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25조의3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설치 여부
4. (생략)

제7조의3(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) 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.

가 50개 -----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-----

----- . <단서 삭제>

1. 영 제18조의5제1호 -----
2. 「주차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 ----- 설치한 -----

② -----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-----

----- .

1. 충전시설-----
2. 전용주차구역의 수

<삭제>

3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제7조의3(전용주차구역 설치) 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용주차구역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(이하 “기축시설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국가, 자치구, 공공기관, 서울시 산하 공기업 및 영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 : 대상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

〈신 설〉

③ 제1항의 충전시설은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5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인증 또는 신고를 완료한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.

제7조의4(충전시설 설치비율) ①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.

②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의 3%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이 비율에 따른 충전시설의 개

2. 제1호 이외의 시설 : 대상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있는 경우

2. 그 밖에 관할 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.

제7조의4(충전시설 설치) 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하되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5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았거나 신고를 완료한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(기축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2) 이상으로 하되, 이 비율에 따른 충전시설의 개수가

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10개까지만 설치하여도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.

③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로서 주차단위구획이 2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 중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하여야 한다.

④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로서 이전 또는 철거 등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시설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〈신 설〉

〈신 설〉

제9조(충전료심의위원회) ① (생략)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으로 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 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.

④ 제7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

⑤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영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안내하는 표지 등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7조의5(충전시설의 개방) 시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가 구축·운영·지원하는 충전시설을 개방하고, 개방하는 충전시설의 위치,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제9조(충전료심의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(생략)

2. 위촉직 위원: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경제 또는 회계 전문가 및 충전 시설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

③ ~ ⑤ (생략)

⑥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〈신설〉

제11조 (생략)

부칙

5.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----- 충전시설 -----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-----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-----.

제11조(업무의 위탁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를 서울에너지공사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제5조, 제6조, 제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 업무
2. 제8조에 따른 충전료 징수 업무
3. 그 밖에 시장이 충전시설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제12조 (현행 제11조와 같음)

부칙

6.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유예기간) 영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 이전

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(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)는 영시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전설비(受電設備)의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.

1.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
가. 공공건축시설: 1년

나.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, 기숙사: 3년

다. 가, 나목 외의 시설: 2년

2.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: 1년

제3조(영구시설물 축조 사전승인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축조하였거나 축조 중인 영구시설물은 이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.

--	--